



제증명 발급 수수료

※ 2019년 1월 1일부 시행

연번	명 칭	금 액 (원)
01	진단서	20,000
02	입원확인서, 입원기간확인서 (병명미기재)	3,000
03	외래통원확인서 (병명미기재)	3,000
04	장애인증명서 (소득공제용)	1,000
05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10,000
06	국민연금장애진단서	15,000
07	출생증명서	3,000
08	심신장애진단서 (동사무소 제출용)	15,000
09	정신지체진단서 (동사무소 제출용)	40,000
10	병사용진단서	20,000
11	사망진단서	10,000
12	사산(사태)증명서	10,000
13	사체검안서	30,000
14	영문진단서	20,000
15	장기요양의사소견서	36,530
16	장기요양의사소견서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	51,350
17	방문간호지시서	19,430
18	상해진단서 (3주 미만)	100,000
19	상해진단서 (3주 이상)	150,000
20	향후치료비추정서 (1,000만원 미만)	50,000
21	향후치료비추정서 (1,000만원 이상)	100,000
22	(후유) 장애진단서	100,000
23	진료기록영상(DVD)	20,000
24	진료기록부 복사 (1-5매까지, 1매당 금액)	1,000
25	진료기록부 복사 (6매부터 1매당 금액)	100
26	제증명 추가발급 1장당	1,000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

※ 발급 권한

- 1) 환자 본인 : 본인 신분증
- 2) 환자가 미성년자 또는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을 경우 직계가족(없을 경우 형제자매)
: 환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등본), 동의서

※ 제증명 발급 구비 서류 미지참 시 발행에 제한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의료의 랜드마크

수술 잘 하는 정직한 병원, 그 장면에 인천성모병원입니다.